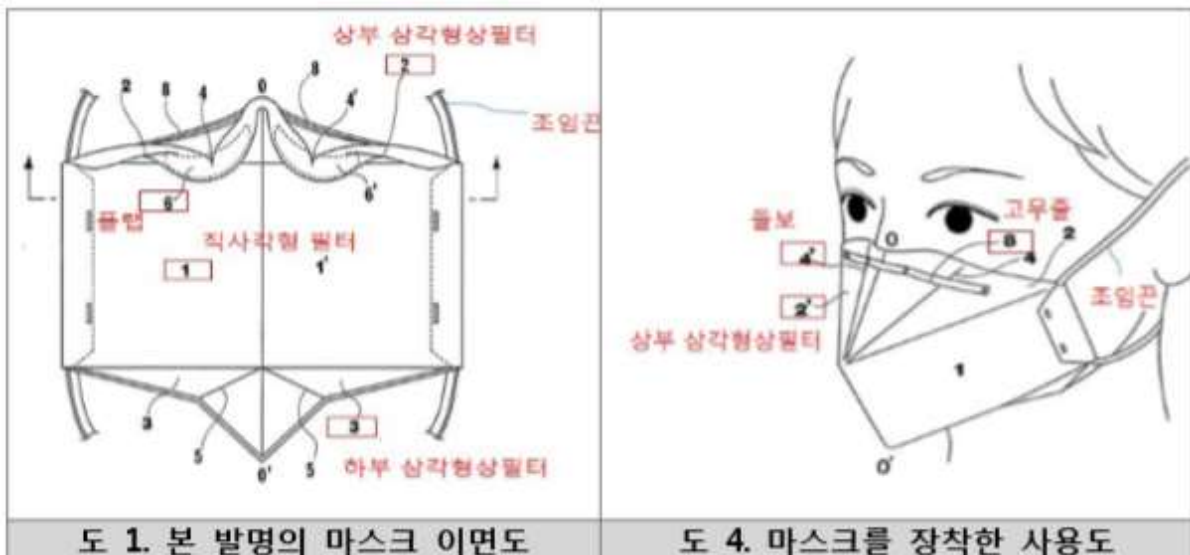


[특허분쟁] 다수의 선행발명 결합과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

6668 판결



1. 출원발명의 요지



【청구항 1】 분진을 여과하는 필터로 되는 마스크 본체와, 장착하기 위한 조임끈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스크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마스크 본체는 그 중심선을 안면의 콧대의 선에 맞춰서, 좌우로 전개된 직사각형의 필터 중앙부와 그 직사각형의 긴 변의 상하에 삼각형상의 필터가 일체로 구성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필터의 상연부(上緣部)를 접어서 겹쳐 플랩을 설치하고, 그 내측에 스펀지체를 첩부(貼付)하여 코부분 양 옆의 오목부에 밀착하도록 합과 동시에(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좌우의 상하부 삼각형상의 필터에 접이용 초음파 용착에 의해 균한 돌보를 설치한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코 부분 쿠션 부착 마스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쟁점: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한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

2. 복수의 선행발명 결합과 진보성 판단기준

“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의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방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차이점 (1): 특허발명은 반으로 접히는 직사각형 필터와 그 상하부에 각 위치하는 두 개의 삼각형상의 필터에 의하여 호흡공간을 형성하나 선행발명 1은 상하부 각 한 쌍의 삼각형 패널 즉 총 네 개의 삼각형 패널로 피라미드 형상의 호흡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즉 특허발명은 삼각형상 필터들 사이에 '직사각형 필터 중앙부'가 부가된 것이다. 그런데 이

는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2에 나타난 사각형상의 필터인 몸체부와 그 상하면에 일체로 형성된 대략 삼각형상의 상부 및 하부파트의 구성을 결합하여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 특허발명은 첩부(발라서 붙임) 방식으로 탄성 재료를 고정하나 선행발명 1은 스테이플러로 고정한다. 그런데 특허발명은 '내측에 스펀지체를 첩부하여'라고만 기재하여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고, 선행발명 1은 명세서에서 스테이플러 외의 다양한 고정 수단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정 수단을 채용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3): 특허발명은 상하부 삼각형상 필터에 접이용 초음파 용착에 의해 균힌 들보를 설치하나 선행발명 1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다. 그런데 선행발명 4에는 코 주변의 폴드 라인을 용접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고 용접에 의하여 형성된 모서리부가 강성을 가진다는 기술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선행발명 1을 기초로 선행발명 2와 4를 결합함으로써 차이점 (3)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을 기초로 선행발명 2,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제1

항 발명에 이를 수 있고, 제1항 발명은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현저한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항 1은 진보성이 부정되고, 하나의 항에 거절이유가 있는 특허출원은 그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7허6668 판결

변리사23년/변호사 15년, 특허심판소송, 민형사, 손해배상, One-Stop Service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